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범위에 고정익과 회전익의 비행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무인수직이착륙기가 포함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05호, 2024. 11. 13. 개정, 2025. 5. 14. 시행)됨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조종자격을 추가하고, 해당 조종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관, 장비·시설기준 및 교육과정을 정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매년 수립·게재하는 교육계획에 기관의 일반현황, 교육일정 및 교육비 반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 부개정고시안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무인멀티콥터”를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로, “정한”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립”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교육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2.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현황
3. 교육과정별 교육 일정
4. 교육과정별 교육비(교육비 반환 포함)에 관한 사항

제20조 중 “2021년 7월1일”을 “2025년 7월1일”로 한다.

별표 1 중 “(무인비행기) 과정 훈련기준”을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과정 훈련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중 “무인비행기)”를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로 하고, 같은 목 (3), 같은 호 나목(2) 및 (3) 중 “무인비행기”를 각각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무인비행기)”를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무인비행기 모의비행”을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모의비행”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인수직이착륙기	길이 150m 이상 × 폭 20m 이상
----------	-----------------------

별표 4 제1호나목 중 “무인비행기와”를 “무인비행기, 무인수직이착륙기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및 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u>무인멀티콥터</u> 를 말한다)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공단 이사장이 <u>정한</u>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 ----- ----- ----- ----- ----- ----- ----- ----- ----- <u>무인멀티콥터</u> <u>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u> ----- ----- ----- <u>운영하는</u> ----- -----.
제17조(보고)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 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u>수립</u> 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u> -----.
<신 설>	1. <u>전문교육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u>
<신 설>	2. <u>전문교육기관 교관의 현황</u>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1년 7월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3. 교육과정별 교육 일정</u> <u>4. 교육과정별 교육비(교육비 반환 포함)에 관한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검토기한) ----- ----- ----- ----- <u>2025년 7월1일</u> ----- ----- ----- ----- ----- ---
---	---